

안산시사회복지위원회조례안

의안 번호	911
----------	-----

제출연월일 : 2000. 10.

제 출 자 : 안 산 시 장

제정이유

- 사회복지사업법에 의거 사회복지에 관한 주요시책 및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연구·조정·건의 등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또는 건의하기 위한 사회복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복지행정구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.

주요골자

- 가. 위원회는 사회복지에 관한 주요시책 등 사회복지증진을 위한 사항을 심의 하도록 함(안 제2조).
- 나.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하고, 위원은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,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자, 사회복지사업을 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, 시의회의원,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이익을 대표하는 자 등으로 구성하여 운영토록 함(안 제3조).

제정조례안 : 별 침

관계법령 발췌서 : 별 침

-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(사회복지위원회)

관련사업계획서 : 해당없음

예산수반사항 : 해당없음

사전예고결과 : 의견없음

- 입법예고 : 2000. 8. 11 ~ 8. 31(20일간)

기타 참고 사항 : 해당없음

안산시사회복지위원회조례안

제1조 (목적)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산시사회복지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구성)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.

③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.

1.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
2.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자
3. 사회복지사업을 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
4. 시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시의회 의원
5.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이익등을 대표하는 자

제3조 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사회복지에 관한 주요시책
2.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연구·조정·건의
3. 시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등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주요 사항

제4조 (위원장의 직무)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,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한다.

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,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5조 (위원의 임기)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다만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.

제6조 (회의)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, 정기회는 연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한다.

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7조 (간사 및 서기) ①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1인을 둔다.

②간사는 사회복지업무담당과장으로 하고, 서기는 사회복지업무담당주사로 한다.

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,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.

제8조 (실비보상) 시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안산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회의참석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9조 (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) 위원회는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, 기타 필요한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.

제10조 (회의록)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의 결재를 받은 후 보관 하여야 한다.

제11조 (운영세칙)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의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소관 실.과		사회여성과
입 안 자	실.과장 직위.성명	사회여성과장 임 영 선
	담 당 직위.성명	사회복지담당 변 한 식
	담 당 자 성명.전화	구 병 화 (행정2863)

안산시사회복지위원회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911
----------	-----

제안년월일 : 2000. 11. 7.

제안자 : 경제·사회위원장의외

1. 수정이유

- 시의원이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내용을 다시 의회의 심의대상이 되는 중복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어 위원 구성에서 시의원을 제외하고자 함.

2. 주요골자

- 안산시사회복지위원회 위원 구성에서 “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회의원”를 삭제함.(안 제2조)

안산시사회복지위원회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안산시사회복지위원회조례안 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제2조 제3항 제4호를 삭제하고, 동조 동항 제5호를 제4호로 한다.

